

# 목 차

정 관 .....	1
-----------	---

# 정 관

## 제1장 총 칙

### 제1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한미글로벌 주식회사”로 약칭할 수 있으며, 이하 “회사”라고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HanmiGlobal Co., Ltd. 라고 표기한다.

### 제2조 (목 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
2. 건축설계 및 감리업
3. 토목, 산업, 주거 및 상업시설에 대한 종합감리업
4. 품질보증, 품질관리 및 교육훈련사업
5. 설계의 검토와 기존구조물의 검사와 조사
6. 토목, 상업, 산업, 주거시설에 관계되는 기술과 기술적 노하우의 개발과 응용
7. 엔지니어링 및 부대사업
8. 전기설계 및 감리업
9.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0. 프로젝트메니지먼트 및 관련서비스업
11. 건설서비스와 관련한 인터넷사업
12. 소방공사 감리업
13. 소방시설 설계업
14. 통신설계 및 감리업
15.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공사업
16. 부동산업 및 부동산 매매, 임대업
17. 해외건설업 및 해외개발사업
18. 주택의 건설, 매매 및 임대업
19. 시설물 유지관리업
20. 부동산 투자자문업
21. 무역업
22. 교육, 출판관련 서비스업
23. 신재생에너지사업
24. 에너지절약자문 및 관련서비스업
25. 에너지진단 및 관련서비스업
26. 환경컨설팅업
27. 무형재산권 임대업
28. 산업환경설비공사업
29. 발전사업
30. 정보통신공사업
31. 정보서비스업
32.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33.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34.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35.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 (본사와 지점의 소재지)

- ① 회사의 본사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 (광고 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hmglobal.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주 식

####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 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제7조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액면가 100,000원)로 한다.

####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8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한도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

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 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의 3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에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사 채

#### 제13조(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3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사채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3을 준용한다.

#### 제14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제9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3을 준용한다.

⑦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년도 중에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 2 (사채및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

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5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6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매일 경제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9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0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한다.

② 이사회 의장이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2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23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의결에 있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 수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1.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기존 이사의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
2.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신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
3. 본 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정관의 개정을 결의하는 경우

#### 제24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비치한다.

####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장 이사, 이사회 및 위원회

### 제27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28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내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 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30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7조 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의 결원 또는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1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대표이사(사장)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사장을 선임하며 필요에 따라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2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2조의 3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외이사는 회기일에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 (이사회 의 의장)

① 이사회 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4조 (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 소집권자로 한다.

#### 제35조 (이사회 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 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 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5조 의 1 (이사, 감사 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 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 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 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6조 (이사회 의 의사록)

① 이사회 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의 의사 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37조 (이사 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 의 보수는 주주총회 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 의 퇴직금 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금 규정에 의한다.

#### 제38조 (위원회)

이사회 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이사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9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6장 감 사

### 제40조 (감사의 수와 선임)

- ①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0조의2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제40조의3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0조의4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40조의5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0조의6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7장 계 산

### 제41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2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2조의2 (외부감사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제43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① 이익준비금

② 기타의 법정적립금

③ 배당금

④ 임의적립금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44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44조의2 (중간배당)

①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가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에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5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된다.

제8장 부 칙

제46조 (업무규정의 제정)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업무추진 및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1996.6.18)

이 정관은 199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6.3)

이 정관은 199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3.22)

이 정관은 200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26)

이 정관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9.15)

이 정관은 200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3.29)

이 정관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9.28)

이 정관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14)

이 정관은 200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5.29)

이 정관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3.19)

이 정관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3.19)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3.25)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3.29)

이 정관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3.28)

이 정관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3.28)

이 정관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3.26)

이 정관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3.24 )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25 )

이 정관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3.23 )

이 정관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3.26 )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주식회사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정관

1996년 06월 18일 제정

1997년 06월 03일 개정

2001년 03월 22일 개정

2004년 03월 26일 개정

2006년 09월 15일 개정

2007년 03월 29일 개정

2007년 09월 28일 개정

2007년 12월 14일 개정

2008년 05월 29일 개정

2009년 03월 19일 개정

2010년 03월 19일 개정

2011년 03월 25일 개정

2012년 03월 29일 개정

2013년 03월 28일 개정

2014년 03월 28일 개정

2015년 03월 26일 개정

2017년 03월 24일 개정

2019년 03월 25일 개정

2020년 03월 23일 개정

2021년 03월 26일 개정